

무배당 당뇨이기는건강보험2004 상품요약서

◎ 문답식 상품해설 Q&A

Q) 이 상품만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이 상품은 일반가입자 뿐만 아니라 당뇨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당뇨병 진단과 합병증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BMI에 따라 영업보험료를 할인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Q) 보험가입시 보험나이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Q) 이 상품의 보장개시일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상품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단,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금,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금,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또한, 치주질환치료,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암진단금 담보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Q)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A) 근로소득자가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 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해지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① 가입나이

| 구 분 | | 가입나이 | |
|------------------------|-------------------------|-----------|-------------------|
| 보통약관 | 상해사망 | 30세 ~ 60세 | |
| 특별약관 | 5대골절진단 | | |
| | 5대골절수술 | | |
|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 | |
| |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금 | | |
| |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금 | | |
| |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 | | |
| |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 | |
| | 당뇨병수술 | | |
| | 만성당뇨합병증진단금 | | |
| | 말기신부전증진단금 | | |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 | |
| | 뇌출혈진단금 | | |
| | 질병사망 | | |
| | 치주질환치료 | | |
|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 | |
| | 당뇨유병자 전용 특별약관 | | (당뇨유병자)중대한뇌졸중진단금 |
| | | | (당뇨유병자)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
| | | | (당뇨유병자)암진단금 |
| | | | (당뇨유병자)말기신부전증진단금 |
| (당뇨유병자)당뇨병성발목이상족부절단진단금 | | | |
| (당뇨유병자)질병실명진단금 | | | |
| (당뇨유병자)질병사망 | | | |

②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 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상품의 특이사항

① 상품의 특징

이 상품은 일반가입자뿐만 아니라 당뇨유병자도 당뇨병 및 합병증에 대해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② (보장부분) 적용이율 : 2.0%

③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 보험기간 | 보험료납입기간 | 보험료납입주기 |
|------|---------|---------|
| 10년 | 전기납 | 월납, 연납 |

③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④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가. BMI에 따른 보험료 할인

i) 매 납입기일기준으로 보험료 납입주기가 월납이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계약자는 'BMI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하, 'BMI 할인'이라 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BMI할인확인일'의 다음 달의 납입회차부터 계속되는 12회차의 'BMI할인대상특별약관'에 대하여 각 영업보험료의 10% 할인이 적용됩니다.(단, 보험료 납입 잔여 회차가 12회차 미만일 경우 잔여 회차에 한하여 'BMI 할인'이 적용됨)

- 피보험자가 'BMI할인대상특별약관' 중 한 개 이상 가입한 경우
- 회사가 피보험자의 BMI가 25미만임을 확인한 경우

ii) '④.가. i)'에서 정한 'BMI할인대상특별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금 특별약관
-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금 특별약관
-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 특별약관
- 당뇨병수술 특별약관
- 만성당뇨합병증진단금 특별약관
- 말기신부전증진단금 특별약관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특별약관
- 뇌출혈진단금 특별약관

iii) '④.가. i)'에서 정한 'BMI 할인'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BMI 할인'을 적용받고자 하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회사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BMI가 25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BMI 제출서류'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BMI 제출서류'에 기재된 건강검진일은 'BMI할인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 'BMI 제출서류'는 건강검진결과(「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의 결과)를 말하며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 성별
- 피보험자 생년월일
- 피보험자 신장
- 피보험자 체중
- 건강검진서 건강검진일

- 회사는 'BMI'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 BMI 계산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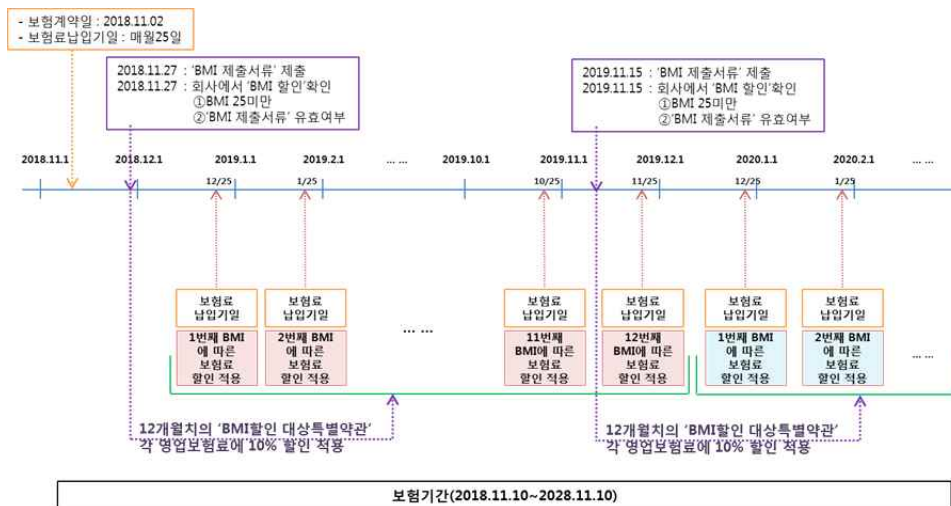
$$BMI = \frac{\text{체중}(kg)}{(\text{신장}(m))^2} = \frac{\text{체중}(kg)}{\left(\frac{\text{신장}(cm)}{100}\right)^2}, \text{ 소수점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신장(cm) : 'BMI제출서류'에 기재된 키를 말함.
 - 체중(kg) : 'BMI제출서류'에 기재된 몸무게를 말함.

나. 'BMI 할인'은 보험기간 내에 '④.가.'를 충족 시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④.가.'를 충족한 후 'BMI 할인'을 마지막으로 적용 받을 12번째 납입회차 이후 연속하여 'BMI 할인'을 적용받기 원하는 경우, 「'BMI 할인'을 마지막으로 적용 받은 12번째 납입회차(납입일)의 1개월 전부터」 「'BMI 할인'을 마지막으로 적용 받은 12번째 납입회차(납입일)까지」 '④.가.iii)'에서 정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④.가.'이 충족된 경우 12번째 납입회차의 다음 달부터 계속되는 12회차에 'BMI 할인대상특별약관' 각 영업보험료의 10% 할인을 적용합니다.
- 만약 '④.가.'를 충족한 후 'BMI할인'을 마지막으로 적용 받을 12번째 납입회차(납입일) 이후에 '④.가.iii)'에서 정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④.가.'에 따라 'BMI 할인'을 적용합니다.

[예시]'BMI에 따른 보험료 할인'



다. '④.가.iii)'에서 정하는 'BMI할인신청일'이란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회사에 'BMI 할인'에 대한 의사표시 한 후 'BMI 제출서류'를 제출한 날을 의미하며, '④.가.i)'에서 정하는 'BMI할인확인일'이란 회사가 'BMI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

로 계약자에게 BMI 할인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날을 의미합니다.

라. 회사는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무효, 소멸, 취소, 해지 시 "BMI할인"을 중지합니다.

마. 선납보험료의 경우 'BMI할인' 적용이 제외됩니다.

바.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또는 특별부활 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에는 'BMI 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활 또는 특별부활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BMI 할인'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④.가.iii)'에서 정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④.가. i)'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체결 시 'BMI할인'을 적용받고자 하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아. '④.가'부터 '④.사'까지 모두 충족하였어도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BMI를 위조·변조한 경력이 있는 경우, 'BMI 할인'이 제한될 수 있음. 상기 제한 사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BMI 할인'을 이미 적용 받은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BMI 할인'을 취소하며, 그 때까지 'BMI 할인'에 따른 할인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⑤ 당뇨병자 가입에 관한 사항

가. 당뇨병자 전용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⑤.나.당뇨병자의 정의'에서 정한 당뇨병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나. 당뇨병자의 정의

※ 당뇨병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①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내원한 적이 있는 자 중에서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의무기록상 공복혈당 126mg/dL 이상 또는 무작위-식후2시간혈당 200mg/dL 이상인 자
2. 당뇨병 치료제가 처방된 자
3. 담당 의사가 당뇨병 환자로 판단한 자
② 위 ①의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이란, 분류번호 E10~E14(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함.

⑥ 기타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피보험자가 '⑤.나.당뇨병자의 정의'에서 정한 당뇨병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없음.

| |
|---------------------------|
| -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금 |
| -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금 |
| -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 |
| -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
| - 당뇨병수술 |
| - 만성당뇨합병증진단금 |
| - 말기신부전증진단금 |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
| - 뇌출혈진단금 |
| - 질병사망 |

나. 아래의 당뇨유병자 전용 특별약관은 각각에 해당하는 기타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당뇨유병자 전용 특별약관 | 기타 특별약관 |
|-------------------|------------|
| (당뇨유병자)중대한뇌졸중진단금 | 뇌출혈진단금 |
| (당뇨유병자)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
| (당뇨유병자)말기신부전증진단금 | 말기신부전증진단금 |
| (당뇨유병자)질병사망 | 질병사망 |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구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보통약관 | 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특별약관 | 5대골절진단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단,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 5대골절수술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 일반상해 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일당 보험가입금액 |
| | 당뇨병 (당화혈색소6.5%이상) 진단금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주2)}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1년 이하 보험가입금액의 0%) |
| | 당뇨병 (당화혈색소7.5%이상) 진단금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주2)}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1년 이하 보험가입금액의 0%) |

| | | |
|---------------------------------|---|---|
| | 보험가입금액 지급 | |
| 당뇨병 (당화혈색소7.5%이상) 진단후치료자금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주2)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으 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5년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1년 이하 보험가입금액의 0%) |
| 질병입원일당 (4일이상)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4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당뇨병수술 | 보험기간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 은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만성당뇨합병증진단금 | 보험기간 중에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 말기신부전증진단금 | 보험기간 중에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 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 뇌출혈진단금 |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 질병사망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치주질환치료 |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료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주질환치료를 받은 경우(치주 질환 치료항목당 연간 1회 한도)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90일 이하 보험가입금액의 0%) |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 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료 급여 항목에 해 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 한도)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90일 이하 보험가입금액의 0%) |
| (당노유병자) 중대한뇌졸중진단금 |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 뇌졸중으로 진단확 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 (당노유병자)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 (당노유병자)암진단금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주4)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일 이후에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 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 | 보험가입금액의 20% (단,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 |

| | | |
|----------------------------|---|---|
| | 하여 보장 | |
| (당뇨유병자) 말기신부전증진단금 | 보험기간 중에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 (당뇨유병자)당뇨병성 발목이상족부절단진단금 | 보험기간 중에 당뇨병성 발목이상 족부절단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 (당뇨유병자) 질병실명진단금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한 실명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 (당뇨유병자)질병사망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주1)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금”,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금”,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진단후치료자금”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 지난날의 다음 날임
- 주2) “치주질환치료”,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임
- 주3)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2)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①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금,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금,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또한, 치주질환치료,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암진단금 담보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

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산출기초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2) 적용이율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3)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적용위험률 예시>

(기본계약, 40세, 상해 1급 기준)

| 담 보 위 험 | | 적용위험률 | |
|---------|------|----------|----------|
| | | 남자 | 여자 |
| 일반상해 | 상해사망 | 0.000216 | 0.000102 |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4. 보험가격지수

○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방식은 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시행세칙 I. 장기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작성지침 “6. 보험가격지수 비교·공시” 준용)

| 보험가격지수란? |
|---|
| <p>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p> <p>*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p> <p>**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p> |

<보험가격지수 예시>

(기준 : 10년만기 전기납, 40세, 상해1급, 상해사망(보통약관) 1억원 기준)

| 남자 | 여자 |
|--------|--------|
| 131.0% | 130.1% |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지환급금

| |
|---|
| ○ 남자 40세, 월납, 상해급수 1급, 10년만기 전기납, 일반가입자형 |
| ○ 기본계약 : 상해사망 1,000만원 |
| ○ 선택계약 :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금 200만원,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금 300만원,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2만원, 당뇨병수술 100만원, 만성당뇨합병증진단금 100만원, 말기신부전증진단금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1,000만원, 뇌출혈진단금 1,000만원, 질병사망 1,000만원 |

(단위 :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지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169,320 | - | 0.0% |

| | | | |
|-----|-----------|--------|------|
| 3년 | 507,960 | 2,200 | 0.4% |
| 5년 | 846,600 | 23,940 | 2.8% |
| 7년 | 1,185,240 | 82,090 | 6.9% |
| 10년 | 1,693,200 | - | 0.0% |

3)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